

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계획의 개요

- 가. 계획명 :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
- 나. 위치 :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
- 다. 계획규모 : 102,232m²
- 라.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공개개요

- 가. 공개기간 : 2022. 12. 12. ~ 2022. 12. 26. (15일간)
- 나. 공개방법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lit.go.kr>)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s://www.eiass.go.kr>)
- 다. 공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

3. 의견제출방법

- 가.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
- 나. 제출방법 :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
(wization@korea.kr, Fax: 044-201-4525) 또는 환경영향평가
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(044-201-4525)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처(055-922-385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